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2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김성원 · 김도읍 · 윤한홍
김정재 · 김선교 · 박성훈
이인선 · 박충권 · 고동진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배관 수송과 도매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체제로 평가됨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 시설의 설치 · 이용 · 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

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위원의 자격과 절차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3에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심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경제·경영·전기·에너지공학이나 그 밖의 가스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가스·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력·가스·통신·교통 등 기간산업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 및 망요금 체계의 산정·검증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의11(위원의 신분 보장)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의12(위원회의 기능) ① 가스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의2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중 공급배관 건설계획 관련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의 운영·관리 및 그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제39조의7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적정성 및 부당한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중지에 관한 사항
6.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7.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 및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8.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9. 지점별 배관의 가스 인입가능량 분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배관 시설이용자의 인입 여부 및 인입가능량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점별 배관의 인입가능량 분석 결과와 실제 공급 실적 간의 차이 검증에 관한 사항

- 12. 배관 계통정보 및 시설운영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령에서 가스배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14.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3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가스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39조의13(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 이용 및 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4(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의15(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가스배관위원회의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중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
2. 가스배관위원회의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심의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다.</u> <u>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내는 상임으로 한다.</u> <u>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④ 가스배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u>
<u><신 설></u>	<u>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경제·경영·전기·에너지공학이나 그 밖의 가스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가스·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력·가스·통신·교통 등 기간산업의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신 설>

<신 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전력·가스 등 공공요금 및
망요금 체계의 산정·검증 분
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제39조의11(위원의 신분 보장) 가
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
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의12(위원회의 기능) ① 가
스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의2에 따른 장기 천연

가스 수급계획 중 공급배관
건설계획 관련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
한 사항

3.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
치자의 시설공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
시설의 공동이용의 운영·관
리 및 그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
항

5. 제39조의7에 따른 가스도매
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적정성 및 부당
한 이용제공 거부·지연의
중지에 관한 사항

6.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7.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료 및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8.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신 설>

이용규정에 따른 배관시설이
용계획에 관한 사항

9. 지점별 배관의 가스 인입가
능량 분석 기준 및 절차에 관
한 사항

10. 배관 시설이용자의 인입 여
부 및 인입가능량에 대한 승
인에 관한 사항

11. 지점별 배관의 인입가능량
분석 결과와 실제 공급 실적
간의 차이 검증에 관한 사항

12. 배관 계통정보 및 시설운영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서 가스배관위
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4.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
13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가스시장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39조의13(위원회의 재정) ① 제
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의 공동이용 및 배관시설의 공

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
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
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
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
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
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

<신 설>

<신 설>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4(의결정족수) 가스배관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의15(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가스배관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u><신 설></u>	<u>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u> <u>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u> <u>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u> <u>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u> <u>의 임직원</u> <u>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u> <u>공무원이 아닌 위원</u>
--------------------	---